

법령코너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56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0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품질인증기관지정

1. SW 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SW시험인증센터)

기.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67-2

나. 대표자 : 김원식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21개 분야)

- 시스템SW : 유틸리티SW,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미들웨어 SW, 운영체제 SW, 바이오메트릭스SW, 통신 SW
- 개발용SW : 데이터 관리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 응용SW : 기업관리 SW, 산업용 SW, 일반사무용 SW, 멀티미디어/게임용 SW, 과학용(교육용) SW, GIS SW
- 디지털콘텐츠 SW : 디지털 콘텐츠 SW, 콘텐츠개발 SW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OS, 임베디드 미들웨어 SW, 임베디드 응용 SW

라.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

2. SW 품질인증기관명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기.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동 222-13

나. 대표자 : 이유중

다.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7개 분야)

- 시스템SW : 정보보호 SW, 시스템관리 SW
- 응용SW : 기업관리 SW, 산업용 SW
- 임베디드 SW : 임베디드 OS, 임베디드 미들웨어SW, 임베디드 응용SW

라. 인증기관의 지정일 : 2008. 11. 06

| 기술 표준 2008.11

지식경제부 고시 제 2008 - 155 호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의2, 제1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 월 06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의 2, 제10조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기타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제품”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제품설명서, 사용자취급설명서 등을 말한다.
3. “품질인증”이라 함은 국내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에 대한 품질특성을 국제표준의 시험평가방법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선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
4. “시험평가기준”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적합성 인증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소프트웨어 제품 분야별 시험 절차, 항목 및 기준치를 말한다.
5. “인증마크”라 함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품질인증심사를 수행하여 요구하는 수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제품 또는 제품의 포장등에 나타내는 표시를 말한다.
6. “제품설명서”라 함은 구매자가 그 제품이 합당한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소프트웨어의 속성을 설명하는 문서 등을 말한다.
7. “사용시매뉴얼”이라 함은 소프트웨어 구매자가 그 제품을 사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문서 등을 말한다.
8. “기능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요구된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9. “신뢰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지정된 수준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0. “사용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사용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을 말한다.

11. “효율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사용될 때 투입된 자원에 대하여 제공되는 성능의 정도를 말한다.
12. “유지보수성”이라 함은 요구사항 및 환경변화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개선·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소프트웨어가 변경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13. “이식성”이라 함은 소프트웨어가 다른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의 환경으로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인증 대상) 모든 분야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기술성 및 경제적 가치가 미흡한 단순기능 소프트웨어
2. 독자적인 환경에서만 운영되는 범용성이 없는 소프트웨어
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2조 1호, 1의2호에 따른 사행성 소프트웨어
4. 건전한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위해성 소프트웨어

제4조(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

-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의 3에 대한 인증대상 소프트웨어 분야는 별표 1과 같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듈을 작성하여 기술표준 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제품설명서 품질인증 기준)

- ① (일관성 등)제품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제품설명서의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확인 가능하고 정확하여야 한다.
- ② (소프트웨어식별내용 등)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의 명칭, 버전, 제조년월일, 공급자명, 공급자주소 등 제품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2. 소프트웨어의 용도
 3. 소프트웨어 개발시 적용한 표준, 권고안 등
 4. 하드웨어 사양, 운영체제, 네트워크 등의 소프트웨어 운영환경
 5. 소프트웨어제품에 포함된 모든 구성요소
 6.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
 7. 소프트웨어제품분의 등 고객 지원 방법
 8. 유지보수의 내용
- ③ (기능성에 대한 설명)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기능
 2. 입력값의 범위, 레코드의 최대 길이 등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계값

3. 타인에 의한 프로그램 및 데이터로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

④ (신뢰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입력데이터가 적실한지 여부의 점검
2. 사용자 실수로 인해 발생하는 중대한 오류의 방지 기능성
3. 오류 발생시 복구 방법

⑤ (사용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상태표시줄, 도구모음, 아이콘 등 사용자인터페이스를 식별할 수 있는 이류
2. 기술적 영역에 관한 지식,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 등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사전 지식이 요구될 경우 이에 대한 내용
3.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 의해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내용
4.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기술적인 방지 장치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5.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업무효율성 및 사용자만족도에 관한 정보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내용

⑥ (효율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응답시간, 처리율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⑦ (유지보수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 및 그 해결에 관한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⑧ (이식성에 대한 설명) 제품설명서는 데이터의 호환성, 다른 사용환경으로의 이식 절차·방법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매뉴얼 품질인증 기준)

① (완전성) 사용자설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사용에 필요한 정보
2. 제5조제3항제1호에 명시된 기능 및 사용자가 사용가능한 모든 기능
3. 제5조제3항제2호에 명시된 경계값
4.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
5.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유지보수할 수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방법

② (정확성 및 일관성) 사용자설명서의 모든 내용은 정확하여야 하며 모호하지 않고 오류가 없어야 하며, 사용자설명서내의 각 용어는 동일한 의미를 가져야 하며, 제품설명서내의 용어와 일치하여야 한다.

③ (이해성) 사용자설명서는 해당 업무를 일상적으로 실행하는 사용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④ (개요성) 사용자설 명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1. 사용자설 명서의 구조 및 내용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사용자설 명서는 복사와 색인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사용자설 명서가 전자분서 등의 형태로 제공될 경우 내용을 인쇄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경우 인쇄 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실행소프트웨어 품질인증 기준)

① (기능성)운영 중에 기능의 정확한 동작, 외부 시스템과의 상호운용 및 보안 환경 등의 속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요구 명세서 및 사용자매뉴얼 등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능이 구현되어야 하며, 정확하게 동작하여야 한다.
2. 소프트웨어 출력 결과 값은 정확해야 하며, 정밀도를 요구하는 출력 값의 경우는 규정된 정밀도를 준수해야 한다.
3. 다른 소프트웨어나 시스템과 데이터 교환이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규정된 포맷으로 통신해야 하며, 데이터 교환 중에 손실이나 변경 없이 정확하게 송수신해야 한다.
4. 보안을 필요로 하는 소프트웨어는 보안 감사, 접근 통제, 데이터 변조 방지 등의 보안기능이 있어야 한다.

② (신뢰성)규정된 조건에서 성능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제품의 능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오조작 및 오입력 등의 사용자의 오류에 대하여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입력조건에 맞는 데이터만을 처리하여야 한다.
3. 실행 취소, 자체 복구 기능 등이 있는 소프트웨어인 경우, 시스템 분체가 발생하였을때 정상적으로 복구 되어야 한다.

③ (사용성) 규정된 조건에서 사용되는 경우에 사용자에게 이해 및 학습이 쉽고, 사용의 편리성 등에 대한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가 사용자에게 요청하는 입력데이터,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메시지 및 실행 결과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2. 오류 발생 시 원인 및 해결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공하여야 한다.
3. 사용자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복구할 수 있거나, 오류 발생 전에 그 결과에 대한 경고 및 확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효율성)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컴퓨터 시스템의 시간적 반응 및 사용되는 자원을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를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규정된 응답시간이 있는 소프트웨어는 응답시간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제시된 최소의 시스템 사양에서 소프트웨어 사용 시 시스템 자원 사용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3. 부하 발생 및 대용량 작업 시에 소프트웨어 운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 ⑤ (유지보수성) 소프트웨어가 수정되거나 관리될 때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시스템, 사용자 또는 유지관리자들의 활동에 관한 속성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자는 소프트웨어 고장이 발생한 경우 고장 원인, 분석 및 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소프트웨어는 유지보수자가 쉽게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3. 소프트웨어의 결함 수정 및 변경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 ⑥ (이식성)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환경에서 사용될 때 적용 및 설치 등에 대한 속성들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제시된 운영체제에서 시스템의 환경에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동작해야 한다.
 2. 사용자가 설치하기 쉬워야 한다.
 3. 타 소프트웨어와 공존하여 운영하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운영상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제8조 (품질인증기관)

- ①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3조 3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인증대상 지정분야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2. 소프트웨어 분야별 품질인증평가모듈 제정
 3. 소프트웨어 제품별 시험평가기준 제정
 4. 기타 소프트웨어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 ③ 각각의 인증기관은 다음 각호에 대한 신뢰성 유지를 위하여 유기적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품질인증 업무의 객관성
 2. 시험평가 수수료 산출
 3. 기타 품질인증과 관련한 세부사항
- 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신청현황, 인증현황 등의 자료를 기술표준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품질인증 신청)

- ①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품설명서
 2. 사용자 매뉴얼
 3. 소프트웨어 요구명세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
 4. 소프트웨어(실행파일) 및 데이터
 5. 지적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 타법에 위배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확인서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에 미비한 사항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

하게 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품질인증 대상여부를 검토한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3항을 검토한 후 시험평가를 수행하거나 또는 신청인에게 반려한다.
- ⑤ 품질인증 대상제품이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판정된 날로부터 3월이 경과되지 않으면 재 신청할 수 없다.
- ⑥ 신청인은 품질인증 신청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인증 심사 절차)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품질인증의 신청이 있을 때는 품질인증심사를 실시한다.
- ② 제1항의 품질인증 심사는 품질인증 심의위원회, 현장(사업장)심사 및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담당간사는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 심사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종합평가보고서를 품질인증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
- ④ 제2항의 시험평가를 위한 기준은 제13조에 따른다.
- ⑤ 위원회의 의견은 재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심사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한 세부시험절차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⑦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 내지 제14조에 따른 심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신청제품에 대하여 심사 완료일부부터 14일간 인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이해관계자 및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11조에 따른 품질인증심의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인증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품질인증 심사를 위하여 품질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중에서 인증기관의 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1.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5년 이상 연구경력을 가진 자
 - 2. 국·공립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급 이상인자
 - 3. 제조업체에서 10년 이상 기술분야에 근무한 자나 단체(협회, 조합)의 이사직에 있는 자
 -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정보기술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
 - 5.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④ 간사는 전반적인 인증절차를 관리하고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며, 인증기관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시험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된 종합평가보고서에 따라 시험평가기준, 평가결과 및 현장심사결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심의하고 품질인증 여부를 결정한다.
 - 1. 심사절차 및 결과의 적정성
 - 2. 대상제품의 인증범위 적정성

3. 기타 품질인증에 관련된 주요사항

- ⑥ 기타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2조(시험평가기준 제정 등)

- ① 인증기관의 장은 KS 또는 국제규격에 부합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평가기준을 신청품목별로 제정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제품의 시험평가기준 등을 제정할 때에는 필요에 따라 시험평가기준제정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할 수 있다. 시험평가기준제정 전문위원회에서 시험평가기준안을 제정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2항에서 정한 심의위원회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5인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세부운영지침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시험평가기준을 제정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인증기관에서 자체개발하여 시험평가기준안을 작성할 수 있다.

제13조(시험평가)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0조 6항에 따른 세부시험절차서에 따라 시험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5조내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에 근거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제정한 제품별 시험평가기준을 따라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평가대상 소프트웨어 운영상 현장시험평가가 필요한 경우 운영현장에서 시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현장시험에 대한 제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④ 시험평가 중 소프트웨어 등의 보완사항이 발생한 경우 3회에 한하여 보완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추가 시험평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심사)

- ① 인증기관의 장은 현장심사팀을 구성하여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② 현장심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공정, 테스트공정 등 소프트웨어 품질관리 환경을 점검하여 동일한 품질의 제품이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팀은 현장심사 완료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인증서 교부 등)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시험평가 결과가 시험평가기준에 적합한 제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제품이 저작권, 특허 등 타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적합으로 판정할 수 없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의 품질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인증기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③ 품질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 결과를 지원 관련 기관장에게 통보한다.

제16조(표시)

- ① 인증기관의 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시행규칙 서식15호의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마크」 표시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의한 표시는 제품, 포장 및 홍보물에 할 수 있다.

제17조(이의신청)

- ① 제16조에 따른 품질인증 표시 제품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인증공고 후 3월이내에 인증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청인의 주소, 성명
 - 2. 신청사유 및 증빙 자료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인증서 변경)

-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품질인증서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서 변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내용에 대한 다음 각호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 품질인증서를 정정하고 재교부하며, 변경 전 품질인증서는 회수한다.
 -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제품명 변경
 - 2. 사업제 양도·양수
 - 3. 제품의 생산중단, 기타 변경사항 등
- ③ 인증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서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19조(인증받은자의 의무)

- ① 인증받은자는 제16조(표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인증받은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1. 인증제품에 대한 과대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2. 인증표시를 오남용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인증제품으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발생시키면 아니된다.

제20조(처분)

-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 가. 제16조(표시)의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 나. 제19조 제2항 1호, 2호, 3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시를 정지할 수 있다.
- 가. 개선 명령 처분을 받고 기일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3. 다음 각 복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 가. 정지 명령 처분을 받고 기일 내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나. 제17조에 따라 이의신청 심의결과 인증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다. 거짓 또는 허위로 인증을 받은 경우

-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에 따라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시정결과를 보고 받았을 경우 현장심사 및 제품의 시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④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호, 3호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업체와 지원 관련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제2호, 제3호의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 받은 날로부터 제16조에 의한 품질인증마크 표시를 할 수 없다.
- ⑥ 인증기관의 장은 처분 결과를 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인증비용 산출) 품질 인증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인증기관이 수행하는 시험평가에 대해서는 기술표준원과 협의된 인증기관의 시험수수료 관리규정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산출한다.

제22조(수당 및 여비) 인증기관의 장은 소프트웨어 품질 인증을 위한 회의참석자, 현장심사자, 시험평가기준안 작성에 참여한 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세부 시행 지침의 제정) 인증기관의 장은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08. 10.)

제1조(시행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이전에 접수되어 인증심사중인 신청제품은 구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81호의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필요사항) 이 고시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련 국제표준인 ISO/IEC 25051, ISO/IEC 9126 등을 참고하여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4조(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 폐지) 기존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에 의한 산업용SW국제표준적합성인증제도는 폐지하고, 고시인 기준으로 유효기간내에 있는 인증제품은 인증기관의 장이 제1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 - 310호

민법 제32조 및 지식경제부장관 및 그소속 청장의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2008년 10월 22일
기술표준원장

법인설립허가

1. 허가번호 : 제2008-37호
2. 법인명 : 사단법인 한국제품안전학회
3. 대표자 : 이종영
4. 허가년월일 : 2008.10.13
5. 사무소 소재지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5동 203호
6. 사업내용 : 제품안전정책 연구개발, 학회지 및 도서의 발간, 제품 안전 기술표준 연구개발, 학술조사 및 자원활용 등

부칙 이 공고는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끝.

| 기술표준 2008.11

기술표준원공고 제 2008 - 319호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업계 및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국제표준(IEC)의 개정에 따라 최신 국제 기준을 도입하고, 내용의 명확화로 안전기준의 이해가 쉽도록 하기 위하여 K60228(전선 및 전원코드의 절연 케이블) 등 전선류 안전기준 9종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가. K60228 전선 및 전원코드 : 절연케이블
국제규격(IEC60228 ed.3.0(2004))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
- 알루미늄 도체 인장강도 요구 조건 추가 등
- 나. K60245-1 전선 및 전원코드 제1부 : 일반요구사항
국제규격(IEC60245-1 ed.4.1(2008))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
- 천연고무 재질(IE1)이 에틸렌 프로플렌고무 재질(IE4)로 대체 등
- 다. K60245-2 전선 및 전원코드 제2부 : 시험방법
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
- 라. K60245-4 전선 및 전원코드 제4부 : 코드 및 가요케이블
국제규격(IEC60228 ed.3.0(2004))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
- 천연고무 재질(IE1)이 에틸렌 프로플렌고무 재질(IE4)로 대체 등
- 마. K60245-5 전선 및 전원코드 제5부 : 리프트 케이블
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
- 바. K60245-6 전선 및 전원코드 제6부 : 아크 용접용 케이블

국제규격(IEC60228 ed.3.0(2004))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
- 천연고무 재질(IE1)이 에틸렌 프로필렌고무 재질(IE4)로 대체 등

사. K 60245-7 전선 및 전원코드 제7부 : 내열성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 고무 절연 전선
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

아. K 60245-8 전선 및 전원코드 제8부 : 고유연성 전기기기용 코드
국제규격(IEC60228 ed.3.0(2004))이 개정됨에 따라 전면 개정
- 천연고무 재질(IE1)이 에틸렌 프로필렌고무 재질(IE4)로 대체 등

자. K 60502-1 전선 및 전원코드 제1부 : 정격전압 1KV 및 3KV 케이블
번역 오류 수정 및 용어 정리

3. 의견제출

붙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다음 기한까지 의견서를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제출기한 : 2008. 11. 28(금)
-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다.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 라.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기술표준원 연락처

-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기술표준원 전기통신제품안전과
- 전화번호 : 02-509-7242(FAX : 02-507-6657)
- 홈페이지 : <http://www.kats.go.kr>
- 이용방법 : 홈페이지 접속 → 기술표준원 소식 → 고시/공고

기술표준원 공고 제2008-312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10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성능검사 및 품질검사 합격기준)에 의하여 항공기 표준부품 검사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29일

기술표준원장

항공기 표준부품 검사기준 고시 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 취지

이용자가 검사기준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용어를 명확히 하고 그림과 표 등을 삽입 하였으며, 최신 국제표준을 인용규격 등에 반영하여 검사기준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선진화 등을 통한 항공기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2. 주요 내용

- 검사기준을 쉽게 표준하기 위하여 시험장치 등에 대한 그림추가 및 비교표 등을 추가
- 검사기준의 용어통일 및 용어 정의 등을 통한 구체화
- 최신 국제표준을 본문 및 인용규격 등에 반영

3. 세부 개정내용

항공기 표준부품 검사기준 개정(안) 생략, 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고시·공고란 참조

4.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개인, 업체 또는 단체는 2008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인적사항(주소 및 전화번호)

다. 단체인 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술표준원 안전정책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2번지, 전화번호 : 02-509-7238~41, FAX : 02-509-73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표준 2008.11